

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2 - 2
안전유형	심의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

2022. 1. 26.



관계부처 합동
[환 경 부]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그간 경과	2
III . 곰 사육 종식 추진방향	3
IV . 세부 이행방안	4
V . 후속조치	7

[붙임1] 사육곰 통계

[붙임2] 곰 사육 종식 협약서(안)

[붙임3]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

I. 추진배경

- '81~'85년 농가에서 수입 증대 목적의 사육곰 수입 이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응답채취용 사육 논란** 지속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적 이용이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한국, 응답 채취용 곰 사육 중단해야"... 제인 구달('20.9.18, 경향신문)
 △"멸종위기종인데... "곰 코스요리 있어요('19.5.7, 한국일보)

- 열악한 사육환경 下 학대 방치 비판, 끊이지 않는 곰 탈출로 국민 안전 위협과 사회적 혼란·비용 낭비

-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응답 수요 감소, 유지관리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낡은 시설 방치와 곰 탈출의 악순환

※ '10년 이후 곰 탈출 사례 23건(연평균 2건), 곰 수색 비용 등 발생

△반달가슴곰 사육장 탈출에 불안한 용인('21.7.8, 세계일보)
 △마을에 나타난 반달곰... 불법 번식·탈출 반복돼도 벌금뿐('20.7.27, KBS)
 △곰 탈출했다 잡혀... 7년간 같은 농장서만 곰 3번 탈출('19.6.7, 조선일보)

- 일부는 사육용·전시관람용 곰을 혼합 사육하며 **불법행위**(증식·도축) 지속* 및 사육 포기 농가**가 발생해도 정부 차원의 보호체계 부재

* 중성화 당시('14~'16) 사육곰에서 전시·관람용 전환 곰은 현재 총 43마리(3개 농가) 존재, 이 중 불법증식 개체 24마리(1개 농가)

** (동해 22마리) 동물단체 협조 下 미국 보호시설로 이송 진행 중, (화천 13마리) 단체 보호 중

△열악한 관리 '사육곰', 구조·보호시설 '시급'('21.11.1, KBS)
 △"배고파요" 농장 탈출 반달곰, 보호시설 없어 다시 철장 갇혀('21.5.26, 중앙일보)

- 그간 사육곰 중성화('14~'16년) 조치 등으로 농가와 개체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곰 사육 자체에 대한 근원적 해결 필요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사육농가	59	56	53	49	46	43	39	36	32	31	27	24
개체수	1,063	1,052	998	1,028	1,007	800	733	660	543	448	407	360

⇒ 국가 위상에 맞게 **민관 협력**으로 **곰 사육을 종결**하고 남은 곰 보호체계를 구축, **사육곰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시점

II. 그간 경과

- '79.6 : CITES* 협약('73.3~)으로 곰을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
 -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81.5 : 농가 소득증대 차원, 산림청에서 수입허가(증식 및 재수출용)
 - * 70년대 말('76년~'80년)에는 연구목적, 재수출을 위한 증식용 등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동물원에만 수입허가를 하였으나, '81년부터 일반인에게도 수입 허용
- '82.11 : 반달가슴곰을 천연기념물(제329호)로 지정(문화재청)
- '85.7 : 국내 곰 보호 여론에 따라 곰 수입 전면 금지(상공부 고시)
- '94.3 : CITES 협약 가입('93.7)으로 수출입 엄격히 규제
- '99.2 : 재수출 곤란 해소를 위해 24세 이상의 용도변경(도축) 허용
 - ※ '99.5월, 야생조수 관리업무 이관(산림청 → 환경부)
- '05.2 : 용도변경(도축) 처리 연한 완화(24세 이상 → 10세 이상)
- '05.3 : 용도변경 약재용(웅담 등)으로 한정(식용 등 제한)
- '14~'16년 : 사육곰 중성화를 통한 증식금지
 - * (배경) 곰 사육 증식 필요 여론에 따라 증식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지원) 마리당 420만원(사료비, 참여 인센티브 등), (결과) 총 967마리 중성화
- '18.12 : 새끼곰 보호·관리 사업(시민단체·동물원(지자체)·환경부 3자 협력)
 - ※ (녹색연합) 시민모금으로 새끼곰 매입('18년 3마리), (청주·전주 동물원) 새끼곰 3마리 보호·관리, (환경부) 곰 보호를 위한 생물자원보전시설(산청, 제주) 지원('19년 5억)
- '20.12 : 사육곰 보호시설(구례) 예산 반영('21년 설계비 2.5억원)
- '21.8~ : 사육곰 민·관 협의체 운영, 곰 사육 증식 논의 착수
(환경부, 사육곰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 참여)
- '21.12 : 추가 보호시설(서천) 예산 반영('22년 설계비 9억원)
- '21.12 : 민·관 협의체에서 곰 사육 증식 합의, 전체농가 의견수렴 완료

Ⅲ. 곰 사육 종식 추진방향

◇ (추진방향) 곰 사육 및 응담 채취 전면 금지

(보호시설 설치 시점 고려, 現 농가 '25년까지 유예)

- ('25년 이전) 곰 사육(응담채취) 종식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참여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육곰 보호·관리 기반 조성
- ('26년 이후) 사육곰 응담채취 금지 시행, 우선순위에 따라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구레시설은 '23년말부터)하여 정부가 인도적 관리

※ (보호시설 이송 우선순위) ① 불법 증식되어 몰수된 개체 → ② 농가가 무상 기증하는 개체 → ③ 농가·시민단체 간 양도·양수 계약한 개체

◇ (민관협업) 정부·시민단체·농가 간 역할분담 및 협업

- (정 부) 몰수나 사육 포기된 곰 수용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
- 농가 불법행위 차단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 (단체·기업) 시민 모금이나 사회공헌사업 일환, 곰 매입 지원
- (사육농가) 사육 포기 시 보호시설 수용 전까지 곰 보호·관리 또는 '25년까지 농가 책임 下 자율 처분

◇ (추진방안) 곰 사육 종식 법제화

-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강한 해결 의지 피력

IV. 세부 이행방안

1. 곰 사육 전면 금지 및 특별법 제정

- (사육종식) 곰 사육 및 곰을 활용한 응답 채취는 전면 금지
 - 보호시설 설치 상황 등 고려하여 현 농가는 '25년 말까지 유예, '26.1.1일부터 정부가 인도적 관리(민간참여·협조)
 - 정부는 보호시설 설치, 곰 매입은 시민사회 중심으로 활동 지속 및 농가는 사육 포기시 보호시설 수용 전까지 관리
- (법제화) (가칭)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국제사회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사육 문제 해결 의지 표명
 - 곰 사육 금지, 기관별 역할분담, 보호시설 설치, 농가의 사육곰·시설에 대한 책임 강화, 인도적 처리 등 규정 포함

< 특별법 주요내용(안) >

- (사육금지) 곰 사육 및 증식 금지, 부산물 등 취득·섭취 금지
→ 위반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개체 몰수
- (역할분담) 보호시설(정부), 매입지원(시민단체), 보호시설 이송 전 곰 관리(농가)
- (보호시설) 국가·지자체의 보호시설 설치·운영 등 근거 마련
- (재정지원) 보호시설 운영비용 지원, 곰 사육 포기 농가 한시적 지원
- (안전관리) 중성화 및 식별조치(사육포기농가 제외), 관리소홀로 곰 탈출시 피해배상 등
- (인도적 처리) 사육곰 질병, 상해 등 발생시 수의사에 의해 인도적으로 처리
- (경과규정) 기존 농가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곰의 응답채취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야생생물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조항 개정*도 병행 추진

*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 삭제

2 사육곰 보호공간 마련

- (보호시설) 농가에서 불법 증식되거나 사육 포기된 곰을 이송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는 공간 마련(2개소)

- (구례) 49마리 수용 규모, 현재 실시설계 중('23년 말 조기 완공 목표)

- 위치 :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10-25
- 부지면적 : 24,163㎡(건축면적 1,227㎡)
- 총사업비 : 90억원(국비 45, 군비 45)
- 사업기간 : '21.3 ~ '24.12
- ※ '24→'23년 준공시기 단축 추진중
- 사업내용 : 사육실, 의료센터, 방사장 등
- ⇒ 사육곰 49마리 수용 규모



- (서천) (구)장항제련소 부지 내 보호시설 추가 설치 예산(설계비 9억원) 반영, '22년 설계 착수('25년 완공 목표)

- 위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 총사업비 : 242억원(국비)
- 사업기간 : '22~'25년
- 부지면적 : 약 102천㎡ (환경부 부지)
- 사업내용 : (사육곰 보호시설) 32천㎡,
(유기동물 보호시설) 7천㎡
- ⇒ 사육곰 약 70~80마리(잠정) 수용 규모



- (장기활용) 향후 사육곰이 자연사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면, 유기 및 소유 포기된 야생동물 보호공간으로 활용

※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야생생물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중), 동물원 허가제 전환(동물원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중)에 따른 유기 야생동물 발생 대비 필요

3 불법행위 차단 조치 강화

- (불법증식 처벌강화) 상습적 불법증식 가중처벌*, 불법증식 개체 몰수 규정 명확화** 및 불법증식에 사용된 개체의 몰수 규정 마련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추가) 상습적 행위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기존규정(허가없이 소유·점유한 개체 몰수)을 적용한 몰수에 대해 법해석 이견 有

- (중성화 강제조치) 전시·관람용으로 전환했으나 **관람용으로 미사용** 되거나 **불법 증식된 곰**에 대한 중성화 강제조치 근거 마련
 - 전시·관람용 전환 곰을 해당 용도로 미사용할 경우 처벌 부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별조치 의무화) 사육곰(전시관람 곰 포함)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조치* 의무화하고 미실시한 자에 **과태료(100만원) 부과**(사육포기 농가 제외)
 - * 유전자 검사를 통한 유전정보 등록(중성화조치시 사육곰에 대해 기 등록)

4 사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 (시설관리 책임강화) 관리 소홀로 곰 탈출시 **사고 수습비용 청구** 및 고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피해액 3배 미만 배상) 근거 마련
 - ※ 고의 또는 피해 발생 가능성 인지 여부, 피해 발생 경감 노력, 위반행위 횟수 등 고려
- (관리실태 점검강화) 사육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실태 집중 점검 (분기별) 후 **위반사항 엄정 조치**(개선명령 및 미이행시 고발)
 - ※ (점검사항) 마리당 사육면적 충족, 먹이 및 적절한 환경 제공, 안전관리 등
- (곰 탈출시 안전관리) 지자체·119 등과 사육곰 농장 정보 공유 및 곰 탈출 대응 매뉴얼(곰 생포, 인명피해 방지, 기관간 협업 등) 마련

5 민관협력을 통한 종식 이행

- (농가협력) 농가 관리기간 동안(23~25년) 곰이 적정 보호될 수 있도록 사육 포기 농가와의 협력방안* 검토 추진
 - * 과거 중성화 당시 농가 사료비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한시적(최대 3년) 협력방안 검토
- (민간협력) 민관협업을 통한 지역단위 사육곰 보호·관리 **모범사례** 창출 및 민간 차원의 곰 보호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추진
- (이행점검) 기존 사육곰 **민관협의체** 정기적 운영,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협력사항* 논의 지속
 - * 사육곰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시설 설치, 곰 매입 및 이송방안 등

V. 후속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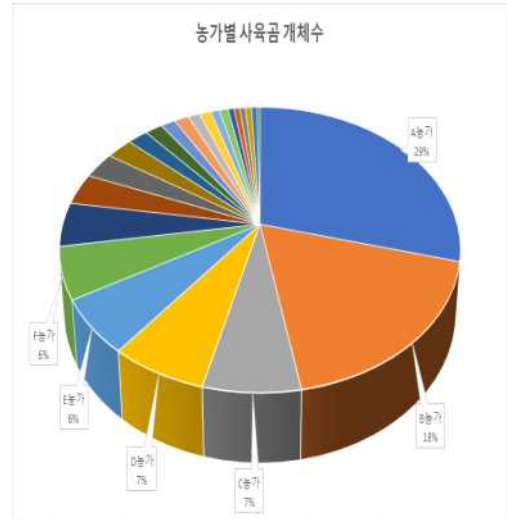
- 곰 사육 종식 선언(이해관계자 MOU 및 간담회, '22.1.26)
- 곰 사육 종식 법제화(특별법 제정안 국회 협의 후 발의, '22.1분기)
- 사육곰 민관협의체 정기 운영(반기 1회, 필요시 수시)

< 곰 사육 종식 추진일정(안) >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곰 사육 금지 (특별법 제정)			특별법 제정				곰 사육 금지
불법증식 차단조치 (야생생물법 개정)			법 개정		법 시행		
보호 공간 마련	구례	설계	착공	준공		사육곰 보호	
	서천		설계	착공		준공	사육곰 보호
농가·민관협력						농가협력, 모범사례 창출, 이행점검	
사육농가 자율처분 (용도변경)						수요에 맞춰 자율처분	

붙임 1 사육곰 통계

□ 사육곰 개체수 추이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개 체 수	1,063	1,052	998	1,028	1,007	800	733	660	543	448	407	360
사육농가	59	56	53	49	46	43	39	36	32	31	27	24

□ 지역별 사육곰 현황

○ '21.12.31일 기준 360마리(24개 농가) 사육 중

관할 지방청	사육 농가	사육곰 출생년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총계	24	360	316	11	12	14	3	4
한강청	9	112	103	1	3	3	-	2
금강청	4	142	138	3	1	-	-	-
영산강청	2	29	29	-	-	-	-	-
전북청	1	3	3	-	-	-	-	-
원주청	6	63	39	5	5	9	3	2
대구청	2	11	4	2	3	2	-	-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서

환경부, 사육곰협회, 동물자유연대·동물권행동카라·곰보금자리프로젝트·녹색연합(이하 “시민단체”라 한다), 구례군, 서천군은 지난 40년간 지속되어온 응답채취용 곰 사육과 그로 인한 곰 탈출, 학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에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맞게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곰 사육을 종식하고 남아 있는 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과 곰을 활용한 응답 채취를 금지하고, 생존하는 곰이 인도적으로 보호·관리되도록 상호 협력한다.
1. 환경부는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고 몰수되거나 사육 포기된 곰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설치·지원한다.
1. 구례군, 서천군은 지역 내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에 적극 협조하고, 곰의 복지를 고려하여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한다.
1. 농가는 사육곰이 보호시설로 이송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고, 사육곰협회는 농가를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농가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1. 시민단체는 모금, 후원 및 구조활동 등을 통해 사육을 포기한 농가로 부터 곰이 보호시설로 안전하게 이송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한다.
1. 사육곰 민관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곰 사육 종식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상호 논의한다.

2022년 1월 26일



장 관 한 정 애



군 수 김 순 호



군 수 노 박 래

사육곰협회

사무국장 김 광 수



대 표 조 희 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 표 전 진 경



대 표 최 태 규



대 표 우 경 선

붙임 3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

핵심조문별 주요내용	위반시 처벌
(제4조) 국가 등의 역할 · (국가·지자체) 보호시설을 마련하여 사육곰 보호 노력 · (시민단체 등) 사육곰 보호정책 협조, 민간활동을 통한 지원 · (사육농가) 보호시설로 이송 전까지 곰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	
(제5조) 곰 사육 금지 · 곰의 부산물 채취 등 목적으로 사육곰 사육·증식 금지(①) · 사육곰(부산물 포함) 취득, 운반, 보관, 섭취하거나 알선 금지(②) · 사육농가가 관람용으로 용도변경시 해당 용도로 사용 의무(③)	· ①벌칙 5년·5천만원 · ②③벌칙 2년·2천만원 · ①②몰수
(제6조) 중성화 조치 · 관람용으로 전환했으나 해당 용도 미사용되거나 불법 증식된 곰에 대한 중성화 강제조치	
(제7조) 사육시설 안전관리 · 곰 탈출시 사육농가가 사고 수습(수색·포획 등), 농가가 미조치시 국가·지자체가 대신 수습하고 비용 청구 · 곰 탈출로 신체·재산상 피해 발생시 피해액의 3배 미만 배상	
(제8조) 식별조치 · 사육농가의 개체 식별조치 의무화(사육 포기 농가 제외)	· 과태료 100만원
(제9조) 인도적 처리 · 사육곰 질병, 상해 등 사유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	· 과태료 100만원
(제10조) 보호시설 설치·운영 · 국가·지자체는 보호시설을 직접 또는 공공기관·법인·단체에 위탁 운영 ·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보호시설 설치·운영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제11조) 재정지원 · 국가·지자체는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 국가·지자체는 사육 포기 농가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곰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	
(제12조) 사육곰 협의체 구성·운영 · 환경부장관은 지자체, 시민사회, 사육농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가능 · 보호시설 설치·운영, 곰 매입·이송, 농가와의 협력 및 지원 등 논의	
(제13조) 보고 및 검사 · 사육농가에게 보고·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검사 가능	· 과태료 100·200만원
<부칙> · 6개월 후 시행(하위법령 마련 준비기간 고려) · 곰 사육 금지 조항은 現 사육농가에 대해 '26.1.1일부터 적용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국민 · 이해관계자 · 관계기관 등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였습니까?

사전 점검 항목	주요내용	비고
정책의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검토배경(추진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85년 농가에서 수입 증대 목적의 사육곰 수입 이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웅담채취용 사육 논란 지속 • 열악한 사육환경 下 학대 방치 비판, 끊이지 않는 곰 탈출로 국민 안전 위협과 사회적 혼란·비용 낭비 ⇒ 국회, 언론, 동물보호단체 등 지속적인 문제 해결 요구 ■ 과거 유사정책 여부, 법령 제개정 이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곰 중성화('14~'16)로 증식금지 조치하였으나, 곰 사육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부족 	
사전 의견 수렴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곰 협의체를 운영('21.8~)하여 곰 사육 종식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21.12) • 시민단체와 곰 구조·관리방안 등 지속 협의(10.22, 11.1, 11.17) • 사육곰협회(농가 대표)와 곰 사육 종식 등 협의(10.13, 11.2) 	
정책대상자 (이해관계자)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농가) 곰 사육 종식 방향에는 찬성하며, 사료비 및 사육시설 보수비 등 지원 요구 ■ (시민단체) 곰 사육 종식을 적극 지지하며, 후원 및 모금 등을 통해 곰 구조활동, 매입 등 협조 입장 	
관계부처 및 관계 기관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견없음 	
전문 가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사육곰 문제 해결 요구 △ 열악한 관리 '사육곰', 구조·보호시설 '시급'('21.11.1, KBS) △ "한국 웅담 채취용 곰 사육 중단해야"... 제인 구달('20.9.18, 경향신문) △ "멸종위기종인데... "곰 코스요리 있어요('19.5.7, 한국일보) 	
정책 소 통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곰 사육 종식 선언(MOU 및 간담회) 언론 홍보 • 국문·영문 보도자료 배포, 기획보도 추진(언론 협의 등) 	